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25 선고 2020가단949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주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11. 18.

판결 선고 2020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6,666,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6. 23.부터 2020. 11. 1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송주희

별지